

- 2026년도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- 최종합격자 및 합격자 등록 공고

2026년도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및 합격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2일
부산광역시장

1 최종합격자 : 2명 > 명단 별첨

- 가.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'응시번호'만으로 합격자를 발표함.
나.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응시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함.

■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: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'미흡'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'미흡'으로 평정한 경우

※ 예비합격자 순위 확인 : 2026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사이트 (<https://busan.recruitcenter.kr>) → '합격자 발표' → 로그인(접수 시 이메일주소 / 비밀번호 입력)

2 합격자 등록 안내

- 가. 등록대상 : 최종합격자 2명
나. 등록일시 : 2026. 5. 26.(화) 09:00 ~ 6. 2.(화) 18:00 (토·일요일 및 평일 12:00~13:00 제외)
다. 접수처 : 부산광역시청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(시청 10층)
라. 등록방법 : 합격자 본인 직접 방문 제출 혹은 등기우편 제출

※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며, '26.6.2.(화)까지 우편 소인분만 유효
※ (우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, 부산광역시청) 10층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
※ 지정된 등록일 방문 제출하는 경우 사전 유선 연락 후 방문 요망 (☎051-888-1191)

마. 제출서류 ※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 등으로 편철하지 않은 채로 제출(필요시 클립 사용)

① 합격자 등록서류 목록표[서식1] 1부	※ [붙임2] 최종합격자 등록서류(서식 1~5)
② 신원진술서[서식2] 1부	
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[서식3] 1부	
④ 이력서[서식4] 1부	
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[서식5] 1부	
⑥ 주민등록증 사본(앞, 뒷면) 1부	
⑦ 주민등록표초본 1부	※ '26. 5. 22. 이후 발급분, 주소 이력 전체 포함
⑧ 기본증명서(상세) 2부	※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
⑨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	※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
⑩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	※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
⑪ 입양관계증명서(상세) 1부	※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
⑫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상세) 1부	※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
⑬ 병적증명서 1부	※ 군필자 또는 군면제자에 한함
⑭ 채용신체검사서(일반 또는 공무원) 1부	※ 최근 3개월 이내 검진분
⑮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결과서 1부	※ 최근 3개월 이내 검진분, 야간근무자용
⑯ 증명사진(3.5 x 4.5cm) 2매	※ 최근 3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

- 주민등록증 사본 외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신원진술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이력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[붙임 2 합격자 등록서류]는 서식 작성 후 서명란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작성 하여 제출
- 채용신체검사서(일반 또는 공무원) 및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결과서 발급은 예약 검진이 일반적이므로, 서류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발급기관(병원)에 문의 바람.

- 가. 채용을 포기하는 최종합격자는 청원경찰 임용 포기서[붙임 4]를 전자메일 (passionately@korea.kr)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격자 등록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.
- 나.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최종합격자의 신체조건 미달, 임용포기, 임용 결격사유 발생, 임용 후 퇴사 및 기존 인력의 의원면직·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(단, 해당시험의 최종합격자 중 「청원경찰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용승인 신청의 반력으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)
- ※ 단, 1년 내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, 그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'26년도 채용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- 다. 최종합격자의 근무부서 및 배치일 등 근무 관련 세부사항은 6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임.
- 라. 「청원경찰법」 제5조(청원경찰의 임용 등) 제2항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및 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(당연퇴직)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, 기타 관계 법령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(당해 면접 시험 최종예정일 기준) 경우,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- **청원경찰법 제5조(청원경찰의 임용 등) ②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.**
- **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**
 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■ **청원경찰법 제10조의6(당연 퇴직)**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
- 3.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. 다만,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.

마.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(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)의 경우,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별도 신청하여야 함.

■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(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)

1. 반환방법

-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붙임 3]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전자우편(passionately@korea.kr)으로 제출 및 접수여부 유선 확인(☎051-888-1191)
- 시청에 방문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우편(수신자 부담 요금 발생)을 통해 반환

2. 참고사항

-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,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
-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

붙임 1. 최종합격자 명단 1부(별첨)

2. 최종합격자 등록서류(서식 1~5) 각 1부(별첨)

3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(별첨)

4. 청원경찰 임용 포기서 1부 (별첨)

- 시험정보 제공 :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(<http://www.busan.go.kr/nbincruit>)
- 시험 관련 문의 : 인사과 공무원인력관리팀 (☎051-888-1191)